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투명성, 책임성 향상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1. 모집기간 : 2016. 4.15(금) ~ 2016.12.30(금)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연중 수시접수 가능)
2.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임절차

- ① 추천요청(법인) ⇒ ②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중 요청인원의 2배수 추천(강남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 ⇒ ③ 이사 선임(법인)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임기 및 직무

- 이사 임기 : 3년
- 이사 직무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
 - 이사회를 통해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음
 -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 (정관으로 대표권 제한 가능)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 함

3. 응시자격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나. 만19세 이상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구민(거주지 제한 없음)

4. 신청서류 제출

- 가. 제출기간 : 연중 접수
- 나. 제출서류 : ① 외부추천이사 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개인정보 제공 및 이사추천 동의서 ④ 서약서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서식

: '강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 내 소통과 참여 → 고시공고에서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가능

다. 제출 방법

○ E-mail 제출 : pull3@gangnam.go.kr

· 메일보낼때 제목 : 외부추천이사 신청(성명000)

5. 후보자 선정방법

가.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후 결정

나. 선정기준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3) 공익단체, 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 4) 기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열정과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재능 기부 및 봉사가 가능한 사람 등

다. 결격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하단부 참고자료 참조)
- 동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한 동법 제7조 제2항의 2, 3, 5에 해당하는자
 - 동법 제7조 제2항 2.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3.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5.제7조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

6. 결과발표 : 선발시 개별 통보

(※ 지원자는 후보자 인력풀에 속하게 되며, 법인에서 외부이사 수요발생시 수시(분기)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추천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나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법인별 평균 년 2~6회(법인별 개최횟수는 다름)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 참석 및 의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 법인은 선임된 이사에게 후원금을 강요할수 없으며, 후원금납부 강요시 우리구에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강남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02-3423-5772 담당: 신영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은 물론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주 소 : 주민등록상의 현주소 정확히 기재
 - 나.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본적,호적)
 - 다. 연락처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라. 전자우편 : 공지사향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
 - 마. 종교 :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무교, 기타(00) 중 택일
(※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공개원치 않음' 으로 기재)
 - 바. 신청분야 : ① 지역사회복지(종합사회복지) ② 어르신(노인)복지
③ 장애인 복지 ④ 여성복지 ⑤ 보육 ⑥ 아동, 청소년복지
⑦ 보건,건강, 의료분야 복지
 - 사. 이사회 참석 가능 빈도 :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 주 1회, 월 1회 등)
 - 아. 학력 :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는 대학교를 포함한 최종학력 기재
 - 자. 경력 : 최근 10년간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
사회복지법인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차.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급수 포함), 기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자격증 중심으로 기재
- ※ 학력, 경력, 자격증의 경우 후보자 선정 이후 (개별연락 받은 이후)요청시 제출

[별첨2]

자기소개서

성명 : _____

※ 외부추천이사 신청동기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서술하되 분량은 2쪽 내외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후보자 인력풀 중 이사 추천시, 현실적으로 개별 면접심사를 하지 못하고 제출하신 서류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기존 신청서 외에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진솔하게 성의껏 잘 작성하신 분들이 후보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첨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사 추천 동의서

본인이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한 개인 정보를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제공하는 것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외부추천이사로 추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 .

성 명

(서명) _____

[별첨4]

서 약 서

본인은 강남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음 사항 -

1. 이사로 선임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외부추천이사 교육을 의무 이수한다.
2. 이사로서의 업무를 관련 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충실히 수행한다.
3. 업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 추구나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임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016. . .

성명

(서명)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이사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